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등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

「보험업법」 제 111 조제 1 항제 2 호,「보험업법시행령」 제 57 조제 2 항 및「보험업감독규정」 제 7-13 조의 제 2 항에 따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 등에 대해 자산 무상양도 등을 한 사실이 있어「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제 3-15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1. 공익법인등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명칭	설립근거 법률	설립일	설립자명	대표자명	임원		
					성명	지위	보험회사와의 관계
(재) 레인보우 청소년 문화재단	민법 제 32 조 /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	2013. 3. 26	(재)동부 문화재단, ㈜동부월드	전일환	김태삼	이사	-
					이장해	이사	-
					박찬명	이사	-
					김상률	이사	-
					정인환	감사	-
					김동성	감사	-

설립당시 재산	보고시점 재산	보험회사 출연금	기타 계열사 출연금		설립목적 및 주요 활동
			명칭	출연금액	
400	350	-	-	-	청소년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, 장학사업

2. 자산의 무상양도등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일자	거래유형	금액	거래사유 및 자금용도	주요 특별악정	비고
2013.12 월중	자산의 무상양도	200	공익법인 설립 목적사업에 사용	-	양도대상 자산종류 : 현금